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788

발의연월일: 2021. 10. 5.

발 의 자:김의겸·강민정·김승남

김정호 • 남인순 • 민형배

서동용 · 장경태 · 조오섭

최기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예연구직 공무원은 박물관, 지자체 등에서 문화재와 관련한 학예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2000년대 이후 지역개발이 늘어나면서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으로서 필요성이 커지고있음.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역시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역사성을 드러낼 수 있는 대규모 문화재 정비사업과 공립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학예연구직 공무원을 본격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함.

이후 전국 지자체에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직은 약 1,0 00여명으로 늘어났지만 고용 형태가 계약직인 경우가 많고 행정업무를 동시에 수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지자체마다 적게는 1명밖에 인력이 없거나 학예연구직이 없는 지자체가 존재하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정문화재 수량과 매장문화재 면적 등에 비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문화재관리 담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계적·전문적 인 문화재관리를 위하여 학예연구직 등 문화재관리 전문인력을 배 치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관리 전문직원의 배치인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문화재의 수량
- 2. 각 지방자치단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면적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4조의2(문화재관리 담당) ① 국 |
| | <u>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계적・</u> |
| | 전문적인 문화재관리를 위하여 |
| | 학예연구직 등 문화재관리 전 |
| | 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 | ② 문화재관리 전문직원의 배 |
| | 치인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 |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1.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
| | 문화재의 수량 |
| | 2. 각 지방자치단체 매장문화재 |
| | 유존지역의 면적 |